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'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의미

1 질의

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의제 (고시) 가 있은 토지 등에 대하여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별도의 사업인정의제 (고시) 를 하는 경우가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'특별히 필요한 경우'에 해당하는지?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토지보상법"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"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, 공익사업에 수용 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"고 규정하고 있으나,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이미 토지 등이 다른 공익사업의 필요로 인해 수용이 된 경우를 뜻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.

다만 당초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폐지 • 변경 고시, 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고시 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의 제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【2021.8.18. 토지정책과-8946】